

(앞쪽)

제 호

검 사 원 증

사 진
3cm × 4cm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뒤 그림 없이 6개월
이내 촬영한 것)

성 명
기 관 명

60mm × 90mm [백상지 120g/m²]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검 사 원 증

성 명:
생년월일:
주 소:

위 사람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기 관 장 명 의 직인

1. 본증 소지자는 수렵면허증 또는 야생동물포획허가증 소지여부, 포획한 야생동물, 박제품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.
2. 본증 소지자는 불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당국에 고발하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